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17 선고 2019가단137884(본소), 2020가단128992(반소) 판결
[계약금반환 청구의 소 · 소유권확인]

전 문

원고(반소피고) 1. A

2. 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구

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지효섭

피고(반소원고) 1. C

2. D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승

담당변호사 김원종, 최미현

변 론 종 결 2020. 8. 20.

판 결 선 고 2020. 9. 17.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로 인한 것을 합하여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C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D은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들과 반소들 사이의 2019. 7. 1.자 주식회사 E에 대한 포괄양도양수계약에 기초하여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00,000원은 피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들은 2019. 7. 1.경 피고들을 양도인, 원고들을 양수인으로 하여 경기 가평군 F 소재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대한 포괄 양도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내용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이 지정한 계좌로 2019. 7. 2. 10,000,000원, 2019. 7. 3. 90,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1) 본소

원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전부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들에게는 ①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기하고, ②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교부하며, ③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계좌를 관리하도록 하고, ④ 이 사건 회사의 우발채무를 고지하고 기존채무를 모두 정리할 의무가 발생하였다. 그런데 피고들은 자신들의 위와 같은 채무를 하나도 이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2019. 7. 1. 이후 이 사건 회사에 발생한 채무를 변제할 것만을 요구하였다. 피고들이 이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중요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로써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고 지급한 계약금 100,000,000원의 반환을 구한다.

2) 반소

① 금전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② 설령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들에게는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없다. ③ 원고들은 본소 청구와 같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계약금을 반환받아야 할 것이어서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들

1) 본소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계약금만을 지급하고 중도금부터는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그런데 ①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원고들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에야 피고들에게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할 의무가 발생하고, ②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교부받고 ③ 법인계좌까지 관리하는 경우 경영권은 전부 양도되는 것인데, 계약금만 입금한 상태에서 양수인인 원고들이 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며, ④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의하면

피고들은 2019. 7. 1. 이전의 채무를 부담할 의무를 질뿐이고 원고들이 계약금을 입금하는 즉시 위 채무를 전부 변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닐뿐더러, 피고들은 기존 채무를 일부 변제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불이행한 바 없으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다.

2) 반소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양수도계약은 원고들의 중도금 미지급으로 해제되었다. 그런데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원고들이 재차 다른 사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를 주장하거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유효를 전제로 피고들이 용납하기 어려운 요구를 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2조 바항에 따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고,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지급한 계약금 100,000,000원이 피고들의 소유임을 확인하여 피고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을 제거하고자 한다.

3. 원고들의 반소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들은 피고들의 반소가 확인의 이익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본안 전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①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여 피고들이 이를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계약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는바, 피고들의 계약금 소유권 자체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다고는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들은 반소 청구원인에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2조 바항에 따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였으나 반소 청구취지에는 그와 같은 기재가 없는바, 피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확인을 구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그와 같이 보는 경우 처분권주의 위반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③ 따라서 설령 피고들이 금전의 소유권을 확인하는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들의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할 수 있다고도

보이지 않아, 피고들의 반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확인을 구하거나 이를 전제로 원고들의 계약금 반환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것과는 별론으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금전의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피고들의 반소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서론

원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계약금 지급으로 인하여 피고들에게 대표이사 등재, 법인인감 교부 등의 의무가 발생하였는데 피고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한다고 주장하는바,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들의 각 의무가 발생하였는지, 발생하였다면 피고들이 의무를 불이행하였고 이를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해제사유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 의무 위반 여부

1) 원고들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5조 가, 나항의 기재에 의하면 기준일인 2019. 7. 1.을 기준으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경영권을 양도하여야 하는데, 경영권이란 ‘사용자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인사 등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이고, 이 사건 회사와 같은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권을 보유한 기관은 대표이사이므로 경영권의 양도란 대표이사의 변경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 ‘경영권’에 관한 정의조항은 없으나 경영권의 뜻을 반드시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특히 원고들이 주장하는 경영권의 의미는 기업경영의 측면에서 노동자와의 관계에서 사용자가 배타적으로 갖는 권한을 강조한 것인데, 이를 영업양수도의 경우에도 곧바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 의미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전체적인 체계 및 다른 조항과의 관계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원고들이 주장하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5조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기준일을 정하는 조항으로 그 주된 내용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에 관하여 갖는 권리 및 의무의 기준일을 정하는 것인 점(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5조 다, 라항), ③ 오히려

경영권의 양도에 관하여 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4조인데,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4조 가항 1)은 명백히 중도금 지급시 피고들이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4조 나항은 피고들로 하여금 계약금 지급당일 또는 원고들과 합의하는 일자에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그로써 경영권 양도에 필요한 사전 준비를 할 것만을 정하고 있는 점, ⑤ 같은 조 다항은 위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개최시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로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공동대표이사로 등기하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 제4조 가, 나항의 기재와도 모순되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2조에서 계약금 지급 후에는 원고들이 세부적인 실사를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중도금이 23% 이상2) 입금된 경우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를 피고들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2조 라, 마항)과도 모순되는 점에 비추어, 이는 원고들을 사실상의 공동대표로 정하거나, 향후 중도금이 지급되는 경우 대표이사로 임명한다는 결의를 하라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⑥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서 ‘대표이사로 임명’한다는 구절이 명시된 규정은 제4조 가항이 유일한바, 등기부상 대표이사 등재 시기는 위 제4조 가항이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⑦ 원고들은 피고들이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시켜 주기로 약속한 것에 비추어 보아도 피고들에게 원고들을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등기부에 등재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 제8, 11, 12,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약속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피고들이 원고들을 공동대표이사로 등재하겠다고 말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의 의무로 이를 인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 A이 2019. 7. 1.부터 사실상 경영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경영권을 행사하면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원고 A이 경영권을 행사하려면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자 공동대표이사로 임명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도 중도금 지급 전까지는 원고들이 피고들과 상의하여 운영을 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대화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원고들을 대표이사로 임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지와는 별개로,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 당시 ‘계약금 지급만으로 바로 대표이사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한다’는 취지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이 원고들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하고 등기부에 등재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다. 법인인감도장 교부 및 법인계좌 관리권 양도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은 ‘경영권’이 ‘사용자가 기업경영에 필요한 기업시설의 관리운영 및 인사 등에 관하여 가지는 권리’임을 전제로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5조 나항에 비추어 경영권 양도의 일부로서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의 법인인감도장을 교부하고, 법인계좌 관리권을 양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경영권 양도의 의미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의 전체적인 체계 및 다른 조항과의 관계에 비추어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②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는 법인인감도장의 교부 시기 및 법인계좌 관리권의 양도시기를 별도로 정하는 규정은 없는바, 원고들이 계약금을 지급하면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계좌 관리권을 양수받을 수 있다는 명시적인 근거는 없는 점, ③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계좌를 관리할 권한을 갖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는 시기에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계좌에 관한 권한도 갖게 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들에게 법인인감도장 교부의무 및 법인계좌 관리권한 양도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우발채무 고지 및 기존 채무 정리의무

1) 의무의 발생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2조 라항에서 원고들은 계약금 지급 후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부적인 실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제9조 가항에서 피고들은 원고들의 실사 기간 중 이 사건 회사의 채무(보증채무 포함)에 대하여 피고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피고들에게 계약금 100,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원고들에게 이 사건 회사에 대한 세부적인 실사를 할 권한이 발생하는 한편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채무를 고지할 의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5조 다, 라항은 기준일인 2019. 7. 1. 이전의 채권, 채무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하여 피고들이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9조 다항도 제4조 나항의 임시주주총회 및 이사회 이전 시점의 사유로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피고들이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있을 뿐 2019. 7. 1. 또는 그 후의 특정 시점까지 피고들이 기존 채무를 변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채무를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정리의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의무불이행 및 계약해제사유 여부

계약의 변경 및 해제3)에 관하여는 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12조에서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들의 귀책사유로 인해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 사업진행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12조 나항), 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사항으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제12조 다항), 고지되지 않은 우발채무가 발견되는 경우(제13조, 제9조, 제10조 나항) 기타 피고들의 의무위반으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뿐이다(제13조). 따라서 피고들의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피고들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 사업진행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기존 채무가 있으므로 피고들이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을 뿐, 우발채무 등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사업을 영위할 수 없거나 사업진행시 막대한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사정은 찾을 수 없다.4) 한편 원고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우발채무 고지 및 기존채무 정리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이행을 지체하였으므로 이행지체를 이유로도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갑 제3, 5,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의 남아있는 채무가 상당한 것을 확인하였다'며 '이 사건 회사의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라', '기존 채무를 모두 정리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한 사실이 인정될 뿐인데, 이는 피고들을 상대로 기존 채무를 전부 변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일 따름이어서5), 원고들이 기존 채무 내역을

고지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이 그 이행을 지체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충현

별지

1) 엄밀히 말하면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계약금이 지급된 이상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금전이 양도된 바는 없고,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이 양도된 것일 뿐이나, 원고들이 금융기관에 대한 채권양도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것도 아니다.

2) 중도금까지 전액 지급되는 경우 전체 매매대금의 약 23.53%(300,000,000/1,275,000,000)가 되는 점, 중도금 지급 후 이 사건회사 주식의 23%를 양도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점(이 사건 양수도계약 제3조 가항)에 비추어 ‘중도금 전액을 지급하여 전체매매대금의 23%가 지급되는 경우’의 오기가 아닌지 의심이 되나, 문언상으로는 중도금 중 23%를 의미한다고 볼 수밖에 없다.

3) 이 사건 양수도계약에는 ‘해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상회복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해제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것이 타당하다.

4) 일반적으로 회사의 인수, 합병, 영업양수도 등의 거래를 하는 경우 매수자가 매도인으로부터 고지를 받거나, 계약 전 실사로알려진 회사의 자산, 부채, 영업권 등을 기초로 양수도대금을 산정하되, 계약 후에도 실사기간을 두거나 계약 후 알려지지 않았던 채무(이를 우발채무라고 한다)가 추가로 발견되는 경우 매도인에게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거나 우발채무를 반영하여 양수도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즉, 우발채무는 그 개념상 사전에 고지되거나 알려지지 않은 채무로서 나중에 발견되는 채무를 뜻하므로, 미리 고지되는 채무를 우발채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원칙적으로 우발채무로 인하여는 손해배상이나 양수도대금 조정 등 금전적인 의무가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우발채무로 인하여 영업양수도 등 계약 자체를 해제하기 위하여는 우발채무가 과다하거나 영업의 중요부분에 영향을 미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라는 특별한 사정이 필요한 것이고, 이는 해제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5) 피고들에게 기존 채무를 특정 기한까지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